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57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JP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김*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9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JP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무등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등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영산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산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담빛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유*연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43번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담빛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정*희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5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 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지이인베스먼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민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이인베스먼트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HAKA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4길 2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HAKA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TAMRA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4길 2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TAMRA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탑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HS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성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301번길 5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HS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푸른미래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임*덕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43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푸른미래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탑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더크리에이션제일차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조*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항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더크리에이션제일차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정인1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최*인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p>○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p>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인1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72조제1항</p> <p>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p>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10~11. 생략</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p> <p>2. 시정명령</p> <p>3. 경고</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1. 면직 또는 해임</p> <p>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p> <p>3. 경고</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개인투자조합</p> <p>3~7. 생략</p> <p>「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p> <p>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p> <p>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p> <p>2. 생략</p>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실시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일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성명		이종건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